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사법분야 정책 답변서 모음

2017. 5.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연락: 간사단체 새사회연대 02-2235-0062, nsociety@naver.com)

1.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4월 1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 질의를 했고 지난 5월 1일 답변을 마감했습니다.
2. 질의는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고 경선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출한 정당의 후보자로 (기호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그 대상으로 했고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순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3. 질의는 법원개혁,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확대, 사법과거청산, 사법피해자 구제의 5개 분야 14개 질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래는 후보별 답변을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4.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는 민주사법연석회의 간사단체인 새사회연대(02-2235-0062, nsociety@naver.com)로 연락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사법분야
대선공약 답변서

1. 법원 개혁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증원 및 민주성에 대한 요구는 높습니다. 현재 대법관 13명(정원 14명, 1명 공석)을 보면 12명이 법관 출신이며, 서울대 출신 11명, 남성은 10명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10명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구성이 가능한 것은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런 구성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배제되어 획일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그 권위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화해서 사회에 소외되어있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1. 후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 정책 및 방안 > -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		

2.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상고사건의 증가를 이유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		
<p>< 정책 및 방안 ></p> <p>–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p>		

3. 제왕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높습니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개선		
<p>< 정책 및 방안 ></p> <p>–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p>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의혹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이 법관의 승진, 배치 등 인사 문제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법관 독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분산과 사법분야에서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후보는 지방법원장 선거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지방법원장 선거 도입		
< 정책 및 방안 > -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		

5. 현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 (가칭)'사법지원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개혁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법원행정처 독립성에 문제있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지원청 설치 필요		
< 정책 및 방안 > -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		

6. 질의 외에 후보의 법원관련 개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및 방안 >

2. 검찰 개혁

검찰개혁은 민주화 시대의 오랜 화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을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통령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수사방해와 외압에 시달리며,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 축소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하는 방안,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후보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비처 신설을 찬성하신다면 이 기관의 수사대상과 범죵, 고비처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	○	
< 정책 및 방안 >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음.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음.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를 위해 처장은 국회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음		

2.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	○	
< 정책 및 방안 >		

-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는 일반적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소유지와 기소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할 것임

3. 만약 후보께서 검, 경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자치경찰의 편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검·경 수사권조정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편성 필요	○	
< 정책 및 방안 >		
<p>-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추진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며, 두 사안이 지체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음</p>		

4. 검찰개혁에는 기관간의 권한분배를 통한 견제와 함께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한 사전적 시민통제 방안으로 현재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법률로 제정토록 하고 기소배심의 일환인 '국민참여 기소심사제'를 도입하자는 방안과 불기소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민통제하는 '국민참여 불기소처분 심사제도' 도입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안 필요		
검찰 기소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의 도입 필요	○	
검찰 불기소 처분 심사제도 도입	○	
< 정책 및 방안 >		
<p>- 부당한 기소 또는 불기소를 심의하는 검찰 내 '(불)기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겠음</p>		

5. 그 외 후보의 검찰개혁과 수사기관의 개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하겠음.

3. 사법서비스 개혁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인해 변호사 배출이 사법시험 때보다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가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시험제의 사실상 쿼터제 운영으로(입학정원의 약 75%) 인해 국가에서 변호사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도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개혁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활동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일정한 대상만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법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방식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등 개혁을 통하여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방식은 문제 있다		
쿼터제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확정은 문제 있다		
변호사수 확대가 필요하다		
< 정책 및 방안 > - 관련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음		

2. 후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칭) 공공변호사청'으로 개편해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지원 소송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확대하고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등의 운영을 이관해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 전반적인 사법서비스를 주관하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사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가칭) 공공변호사청 신설이 필요하다		
<p>< 정책 및 방안 ></p> <p>- 사법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부서의 형태와 위상은 제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p>		

3. 질의 외에 후보의 사법서비스 분야의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4. 사법 과거청산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하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진상규명 노력은 일정정도 이루어졌지만, 과거 사법부의 정치재판에 대한 진상조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개별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거조사 없는 서류재판, 공안기관에 의한 조작사건, 법관 독립 위협,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어 있던 시절, 단순히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가능하게 된 배경과 구조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1. 후보는 사법부 과거청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법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사법 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필요하다		
< 정책 및 방안 > -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겠음		

2. 질의 외에 후보의 사법 과거청산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5.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

몇 년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법피해자임을 주장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해당 재판장을 위협해 실형을 산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내부자 징계를 정당화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대법원을 비롯해 각 지방법원 앞에는 피켓을 들고 판결에 항의하는 사법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심 등 사법제도를 통한 구제가 시효 경과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불충분한 조사로 재판결과가 바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보통 판결 후 10여년 넘게 자신의 무고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1. 후보는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 필요하다		
< 정책 및 방안 > -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겠음		

2. 후보는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안철수 후보 사법분야
대선공약 답변서

1. 법원 개혁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증원 및 민주성에 대한 요구는 높습니다. 현재 대법관 13명(정원 14명, 1명 공석)을 보면 12명이 법관 출신이며, 서울대 출신 11명, 남성은 10명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10명이 서울대불 졸업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구성이 가능한 것은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런 구성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배제되어 획일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그 권위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화해서 사회에 소외되어있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1. 후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	
< 정책 및 방안 >		

1. 법원 개혁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증원 및 민주성에 대한 요구는 높습니다. 현재 대법관 13명 (정원 14명, 1명 공석)을 보면 12명이 법관 출신이며, 서울대 출신 11명, 남성은 10명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10명이 서울대불 졸업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구성이 가능한 것은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의 분투명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런 구성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배제되어 획일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그 권위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화해서 사회에 소외되어있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1. 후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① 찬성	② 반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	
< 정책 및 방안 >		

2.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상고사건의 증가를 이유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	✓	
< 정책 및 방안 >		

3. 제왕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높습니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개선	✓	
< 정책 및 방안 >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의혹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이 법관의 승진, 배치 등 인사 분체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법관 독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분산과 사법분야에서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후보는 지방법원장 선거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지방법원장 선거 도입		
< 정책 및 방안 >		

5. 현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 (가칭) '사법지원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개혁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법원행정처 독립성에 문제있다	✓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지원청 설치 필요		
< 정책 및 방안 >		

6. 질의 외에 후보의 법원관련 개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및 방안 >

- 대법원장 호성제.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정권 삭제.

2. 검찰 개혁

검찰개혁은 민주화 시대의 오랜 화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을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통령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수사방해와 외압에 시달리며,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 축소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하는 방안,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후보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비처 신설을 찬성하신다면 이 기관의 수사대상과 범죄, 고비처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	✓	
< 정책 및 방안 >		

2.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	✓	
< 정책 및 방안 >		

3. 만약 후보께서 검, 경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자치경찰의 편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② 반대
검경 수사권조정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편성 필요		
< 정책 및 방안 >		
검토가능.		

4. 검찰개혁에는 기관간의 권한분배를 통한 견제와 함께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한 사전적 시민통제 방안으로 현재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법률로 제정토록 하고 기소배심의 일원인 '국민참여 기소심사제'를 도입하자는 방안과 불기소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민통제하는 '국민참여 불기소처분 심사제도' 도입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안 필요		
검찰 기소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의 도입 필요	△	
검찰 불기소 처분 심사제도 도입		
< 정책 및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형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 결정 시 국민배심원제 도입. ✓ 검찰시민위원회의 방정 기구화 증정 검토. 		

5. 그 외 후보의 검찰개혁과 수사기관의 개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 ✓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함.
- ✓ 검사권만 임명하는 병행 주요 직책을 일반직 및 계약직 직위로 확대.
- ✓ 자문기관에 대해 병기 확대.
-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점진적 축소.

3. 사법서비스 개혁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인해 변호사 배출이 사법시험 때보다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가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시험제의 사실상 쿼터제 운영으로(입학정원의 약 75%) 인해 국가에서 변호사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도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개혁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활동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일정한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법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방식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등 개혁을 통하여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방식은 문제 있다		
쿼터제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확정은 문제 있다		
변호사수 확대가 필요하다		
< 정책 및 방안 >		

2. 후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칭) 공공변호사청'으로 개편해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지원 소송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확대하고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등의 운영을 이관해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 전반적인 사법서비스를 주관하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사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가칭) 공공변호사청 신설이 필요하다		
<p>< 정책 및 방안 ></p>		

3. 질의 외에 후보의 사법서비스 분야의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4. 사법 과거청산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하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진상규명 노력은 일정정도 이루어졌지만, 과거 사법부의 정치제판에 대한 진상조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개별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거조사 없는 서류재판, 공안기관에 의한 조작사건, 법관 녹취 위협, 사법부의 독립이 형해화되어 있던 시절, 단순히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가능하게 된 배경과 구조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1. 후보는 사법부 과거청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법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사법 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필요하다		
<p>< 정책 및 방안 ></p> <p>사법부 과거 청산 필요성에 공감.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및 합의 필요.</p>		

2. 질의 외에 후보의 사법 과거청산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p>< 의견 및 방안 ></p>

5.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

몇 년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법피해자 입을 주장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해당 재판장을 위협해 실형을 산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판결은 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내부자 징계를 정당화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대법원을 비롯해 각 지방법원 앞에는 피켓을 들고 판결에 항의하는 사법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심 등 사법제도를 통한 구제가 시효 경과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불충분한 조사로 재판결과가 바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보통 판결 후 10여년 넘게 자신의 무고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1. 후보는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 필요하다		
<p>< 정책 및 방안 ></p> <p>사법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법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징계를 하나거나 판결이 어려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반영과 개선이 필요하다.</p>		

심상정 후보 사법분야
대선공약 답변서

[정의당 1호] 발송공문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12호 Tel 02-788-3218 Fax 02-788-0467
홈페이지 <http://www.justice21.org> 담당자 : 정책위원회 오송이 (010-****-****), 이메일 : policypart@gmail.com

문서번호 : 정의당 정책위원회 제17-04-26-04호

시행일자 : 2016년 04월 26일

수 신 :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참 조 :

제 목 : 제19대 대통령 후보 대상 사법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의당 심상정후보에게 보낸 사법분야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별첨>

1. 후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	
< 정책 및 방안 > 제19대 선거 공약으로 대법관 다양성 보장을 위해 우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도 대법관 자격을 인정을 하도록 법개정을 하겠음.		

2.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상고사건의 증가를 이유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	●	
< 정책 및 방안 >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원관 정원을 늘이겠음		

3. 제왕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높습니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개선	●	
< 정책 및 방안 > 대법원장이 심사대상 대법관을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사람의 추천자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 투명한 대법관 임명이 되도록 하겠음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의혹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이 법관의 승진, 배치 등 인사 문제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법관 독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분산과 사법분야에서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후보는 지방법원장 선거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지방법원장 선거 도입			●
<p>< 정책 및 방안 ></p> <p>직선제를 통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및 고위직 판사들의 인사권 남용은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법원 개혁으로 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도입은 현재의 인사권 남용 및 법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판단함</p> <p>다만, 직선제에는 주민직선제도 있지만, 소속 판사들에 의한 직선제도 가능함. 어느 방안이 법원 민주화와 사법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직선제 선출 법원장을 지방법원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장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은 법관인사권을 ‘고등법원’으로 분산하자는 공약을 제시하였음.</p>			

5. 현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 (가칭)‘사법지원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개혁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법원행정처 독립성에 문제있다	●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지원청 설치 필요		●
<p>< 정책 및 방안 ></p> <p>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직급을 하향조정하겠음. 법원행정처는 판사의 재판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법지원청’과 같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기 보다는 그 지위와 위상에 맞도록 개선하겠음. 특히 인사권이 고등법원으로 분산되고, 판사인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원행정처의 조직 축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p>		

6. 질의 외에 후보의 법원관련 개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 의견 및 방안 ></p> <p>1)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와 법관 재임용 심사 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p> <p>2) 노동, 의료 등 특정 분야의 재판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노동관련 사건,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갖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영권 침해나 손해의 유무를 기초로 노동자의 인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노동사건에 재판을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약으로 제시하였음</p>
--

2. 검찰 개혁

검찰개혁은 민주화 시대의 오랜 화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을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통령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수사방해와 외압에 시달리며,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 축소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하는 방안,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후보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비처 신설을 찬성하신다면 이 기관의 수사대상과 범죄, 고비처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	●	
<p>< 정책 및 방안 ></p> <p>독립기구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 및 공소권까지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찬성임</p> <p>수사대상은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관 등,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판사, 검사 및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은 당연히 포함시키며,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경우도 가능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또한 범죄는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범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p> <p>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정부 부처에 속하지 않고, 소속 직원의 인사 및 예산 등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기구 설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회나 다른 별도의 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p>		

할 것임

2.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	●	
<p>< 정책 및 방안 ></p> <p>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임.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 당장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권한분점을 넘어 '시민의 인권'보호이기 때문에 경찰개혁 및 경찰 수사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의자의 범죄횟수, 피해정도,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단순 절도, 강도 등과 같은 민생범죄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권 행사의 적절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경찰 내 수사권 점검단'과 같은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경찰, 법조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명칭, 위상과 권한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 필요)'에서 종합 모니터링하여, 경찰 수사권 행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방향에서 궁극적으로는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 이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함께 정비하면 권한분산을 넘어 경찰개혁까지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임</p>		

3. 만약 후보께서 검, 경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자치경찰의 편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검·경 수사권조정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편성 필요	●	
<p>< 정책 및 방안 ></p> <p>현행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 민주성이 취약해 시민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경찰행정이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기 쉬운 문제, 지방행정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협력이 어렵고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p> <p>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p>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과 방법 등 민생에 밀접한 분야부터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점차 자치경찰의 기능을 확대시키겠음. 이와 함께 자치경찰 위원회 설치 및 민주적 구성과 운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겠음

4. 검찰개혁에는 기관간의 권한분배를 통한 견제와 함께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한 사전적 시민통제 방안으로 현재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법률로 제정토록 하고 기소배심의 일환인 '국민참여 기소심사제'를 도입하자는 방안과 불기소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민통제하는 '국민참여 불기소처분 심사제도' 도입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통제방안 필요	●	
검찰 기소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의 도입 필요		
검찰 불기소 처분 심사제도 도입		

< 정책 및 방안 >
 '직접적 통제방안'의 하나인 '대배심제'나 '검찰 불기소 처분 심사제도'의 경우 현재 '재정신청제'가 시행되고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옥상옥'일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두 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음(일본만 공무원 직권 남용죄 등 제한된 범위의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인정). 따라서 '검찰기소권' 통제를 위해서는 '기소대배심'이나 '불기소처분 심사제' 도입과 '재정신청제 확대'(고소, 고발 모든 사건에 적용) 중 '사법정의'와 '인권보호'에 적합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 확정 이후 시행될 수밖에 없어 현재 법원이 하고 있는 역할을 '시민 중심의 심사제도'가 하는 것이 되어 재정신청제도를 유지할 경우 권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임

5. 그 외 후보의 검찰개혁과 수사기관의 개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1)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19개 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주민직선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출된 지방검찰청이 소속 기관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도록 하였음.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수직적, 위계적, 명령하달식 구조 하에서 인사권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에 집중됨으로써, 검찰 내 민주화, 검사의 독립성은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임은정 검사 재임용을 둘러싼 검찰의 행태는 언제든지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양심있는 검사들을 재임용을 무기로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임

2)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검찰국' 폐지, 법무부 과장급 이상 검사임용 제한 및 최소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무부 비검사직으로 근무한 변호사의 '검사임용' 제한 및 검찰 소속 공무원의 법무부 특별채용, 재임용 등의 경우도 '임용제한'을 하도록 함

3)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원천 차단

'청와대에 근무한 법조인'의 경우 재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현직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다른 권력기관 파견도 최소화함

3. 사법서비스 개혁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인해 변호사 배출이 사법시험 때보다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가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시험제의 사실상 쿼터제 운영으로(입학정원의 약 75%) 인해 국가에서 변호사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도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개혁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활동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일정한 대상만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법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방식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등 개혁을 통하여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방식은 문제 있다	●	
쿼터제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확정은 문제 있다	●	
변호사수 확대가 필요하다	●	

< 정책 및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육, 양성을 통한 유능한 법조인의 배출과 이를 통한 국민 사법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가주의가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불공정, 특히 학력, 학벌, 나이 등 특정 요건을 기준으로 한 불공정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인가주의’가 아니라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요건을 충족한 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칙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입학 정원의 75%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하여 뽑고 있어, 점차 변호사시험 미합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방식은 변호사 배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법조계의 이해관계 때문이지

대 국민 사법서비스 확대라는 취지와 기본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정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함. 대신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은 그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합격시켜야 함 그리고 '인가주의'가 폐지된다면, 쿼터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당연히 변호사는 증가할 것임

2. 후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칭) 공공변호사청'으로 개편해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지원 소송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확대하고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등의 운영을 이관해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 전반적인 사법서비스를 주관하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사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가칭) 공공변호사청 신설이 필요하다		
<p>< 정책 및 방안 ></p> <p>'행정소송'이나 '모든 민사소송'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특히 '행정소송'은 시민이 '국가행위'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현재도 민사 및 가사사건의 일부 소송대리 내지 소송서류 무료작성과 조언을 하고 있어 업무확대를 기준으로 한 신규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함.</p> <p>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사업이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성폭력 물 법률지원사업, 국선변호 관련 법원 지원사업,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국선대리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법률지원사업을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와 같은 총괄 기구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방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음</p>		

3. 질의 외에 후보의 사법서비스 분야의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없음

4. 사법 과거청산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하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진상규명 노력은 일정정도 이루어졌지만, 과거 사법부의 정치재판에 대한 진상조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개별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거조사 없는 서류재판, 공안기관에 의한 조작사건, 법관 독립 위협, 사법부의 독립이 형해화되어 있던 시절, 단순히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가능하게 된 배경과 구조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1. 후보는 사법부 과거청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법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사법 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필요하다	●	
<p>< 정책 및 방안 ></p> <p>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과거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된 ‘과거사법’에 사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가 포함되어야 함</p>		

2. 질의 외에 후보의 사법 과거청산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p>< 의견 및 방안 ></p> <p>반인권적, 반인도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음</p>
--

5.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

몇 년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법피해자임을 주장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해당 재판장을 위협해 실행을 산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판결은 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내부자 징계를 정당화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대법원을 비롯해 각 지방법원 앞에는 피켓을 들고 판결에 항의하는 사법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심 등 사법제도를 통한 구제가 시효 경과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불충분한 조사로 재판결과가 바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보통 판결 후 10여년 넘게 자신의 무고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1. 후보는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 분	① 찬성	② 반대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 필요하다		
< 정책 및 방안 >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시효만료나 불충분한 수사 등으로 재심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여 구제기회를 원천적으로 얻지 못하는 억울한 사법피해자들도 있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더라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음.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구제를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구제 대상의 유형이나 시간, 구제대상 선정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 후보는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의견 및 방안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를 했거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종류 및 정도와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 박탈.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소 3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음
정경유착 재벌총수의 사면 원천 금지 및 처벌 강화. 50억 이상 배임·횡령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선고. 재벌일가의 황제면회,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온갖 특혜 제한 및 배임·횡령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형을 받는 경우 그 금액과 상관없이 기업체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겠음

끝.

정의당 대표 심상정